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에 대한 기초검토 [요약]

◆ 디자인법 조약(DLT) 성안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예정(24.11.11~2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내 법제도 및 산업계 영향을 파악하여 조약 가입 필요성 내지 시급성 검토

□ 조약 개요

- (목적) 디자인출원, 등록절차에 대한 통일화된 국제적 기준 설정
- (경과) '05년부터 의제로 제기되었으나, 일부쟁점*에 대한 국가 간 대립('14~)으로 논의 정체, 외교회의 개최 결정으로 '24년 조약 성안 유력
 - * 출원서에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등 출처 기재 / 최빈·개도국 기술지원, 수수료 감면 등
- (장점) 대리인 없이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출원인에게 유리, 기한의 구제, 실시권 단일신청 등 편의성이 있어 출원인/등록권자 유리
- (단점) 절차지연으로 심사처리지연, 방식심사 부담, 일부 타국 출원시 전통문화표현물 등에 대한 출처기재 강제되어 출원인 불리, 개도국 기술지원 등 분담금 부담 가능성 有

□ 주요 쟁점

디자인법 조약(DLT) (안)	국내 법령(현행)
제3조 (출원서) 전통문화표현물, 전통지식, 생물학적/유전자원에 대해 출처기재 요구	관련 사항 없음 (출처기재 요구 국가 출원시 장애요인)
제4조 (대리 :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의 단순 납부에 한해 대리인 선임 없이 가능	재외자는 절차수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 선임 필수(강제대리)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12조 (기한의 구제) 기한 만료 이후에도 2개월 이상의 기간 연장을 신청 가능 (Art.12 / Reg.10(2)(ii))	출원·등록 관련 절차 기한 만료 후 기간 연장신청 규정 없음 . 책임질 수 없는/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기한 을 미준수한 경우 구제 불가
제15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신청) / 제16조 실시권 등록신청서상 실시권 계약의 재무조건 요구 불가 / 단일신청 가능(명의변경, 성명/주소 同)	전용·통상실시권 등록신청시 대가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및 제38조), 단일신청 불가
제22조 (기술지원/역량강화) 조약 본문에 개도국 기술지원, 수수료 감면 의무화 요구	(선진국 vs. 개도국간 본문/규칙/삭제를 두고 견해대립)

□ 향후 계획

- 대응T/F 운영, 정책연구용역(5월~) 수행, 내·부 의견조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

디자인법 조약(DLT)에 대한 기초검토

[외부 의견 조회용]



2024. 5.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목 차

I. 검토 배경	1
1. 디자인법 조약(DLT) 개요	1
2. 검토결과 요약	2
II. DLT-디자인보호법 주요 쟁점조항 세부검토	3
【제3조】 출원 기재사항 및 도면 표시·제출	3
【제4조】 대리인 및 송달을 위한 주소	5
【제5조】 출원일	6
【제12조】 기한의 구제	8
【제13조】 권리회복	9
【제14조】 우선권 주장의 정정·추가 및 회복	11
【제15~16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 및 변경·취소	13
【제22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15
III. 향후 계획	16
【붙임1】 디자인법 조약(안) 전문(번역)	17

I. 검토 배경

1 디자인법 조약(DLT) 개요

□ 조약의 의의

- (명칭) DLT (Industrial Design Law and Practice Treaty)
- (목적) 세계 출원인의 권리취득 편의를 위해, 디자인 출원·등록절차 및 요건에 대해 국가 간 통일화된 기준 설정
 - * PLT(특허) 및 STLT(상표)와 유사한 성격·지위의 디자인 관련 국제 조약

□ 추진 경과

- (경과) 조문 대부분은 합의 단계에 도달('07~'12)하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수년 간 논의가 정체된 상황

디자인법조약 쟁점 분야

1 개도국 기술지원 조항에 대한 미국과 아프리카 그룹의 견해차 지속
(아프리카 그룹 및 개도국 그룹은 조문 삽입 요구 ↔ 미국 등은 결의문 형태 주장)

2 아프리카 그룹의 전통지식, 문화표현물의 출처공개 관련 조항 추가 제안('14년~)
(아프리카 그룹 ↔ 선진국그룹 및 우리나라 반대)

- ('14.11) 아프리카그룹이 디자인출원서에 유전자원·전통지식·문화표현물 관련 정보 및 출처를 기재하도록 제안(32차 SCT)
- ('15.3~) 동 제안은 실제적 사항으로, DLT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 대립
- ('17~'19) 쟁점**1**은 미국의 반대로, 쟁점**2**는 아프리카 그룹이 조약 본문 삽입을 고수하며 모든 협상 결렬
- ('22.7) 개도국 그룹 주도로 DLT 외교회의 개최 결정(63차 총회)
- ('24.11.11~11.22) 외교회의 개최 예정(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https://www.wipo.int/diplomatic-conferences/en/design-law/index.html>

2

검토결과 요약

조항	주요 내용 및 검토	
제1조 (용어)정의	내용	DLT 조약 내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검토	불일치 없음
제1조의2 일반원칙	내용	DLT는 절차법으로서 다른 실체법 및 조약과 관계 없음을 규정
	검토	불일치 없음
제2조 적용 대상	내용	DLT의 적용 범위 및 지역에 대한 규정
	검토	불일치 없음
제3조 출원서	내용	출원서 및 도면에 대한 기재사항요건, 전통문화 등에 대한 출처 공개
	검토	불일치(쟁점 有 : 전통문화 등 출처 공개 의무화 여부)
제4조 대리인/송달주소	내용	대리인 선임 요건,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지, 위임장 등
	검토	불일치(디자인보호법) - 재외자의 강제대리 여부
제5조 출원일	내용	출원서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 및 시기,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요건
	검토	불일치 없음
제6조 공개시 출원유예	내용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기간(6/12개월)
	검토	불일치 - 신규성 상실 예외의 기산일(우선일 x)
제7조 창작자 명의 출원	내용	창작자 명의로 출원시 그 요건(성명, 양도증서 등)
	검토	불일치 없음
제8조 복수디자인 보정/분할	내용	복수디자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정 및 분할
	검토	불일치 없음
제9조 디자인 공표	내용	디자인 비공개 기간(6개월)
	검토	비밀디자인 청구하였으나 혐의불성립 공보게재시 규정 無
제10조 서류제출	내용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요건 및 기재사항(종이/전자, 번역, 서명 등)
	검토	불일치 없음
제11조 갱신	내용	디자인권 갱신(연장) 신청시 요건 및 기재사항, 갱신기간(6개월) 등
	검토	불일치 - 갱신기간의 만료일 상이
제12조 기한의 구제	내용	행정절차 관련 기한에 대한 연장 신청 및 요건, 연장기간(2개월) 등
	검토	불일치 - 의견제출기간 기한만료후 절차계속 부여 등
제13조 권리회복	내용	상당한 주의, 비고의로 인한 기한 미준수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회복
	검토	불일치 - 재심사 청구의 추후보완 등
제14조 우선권 주장 정정 등	내용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우선권 주장의 회복 의무 규정
	검토	불일치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23.12.31 시행)으로 일부 해소(쟁점 有)
제15-16조 실시권 등록/변경/취소	내용	실시권 및 담보권의 등록 신청 (재무조건 요구 불가)
	검토	불일치(특허권 등의 등록령) - 대가 또는 대의 지급방법 등 요구
제17조 실시권 미등록	내용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영향
	검토	불일치 없음
제18조 실시권의 표시	내용	실시권에 의해 사용된다는 표시 여부에 따른 디자인권에 대한 영향
	검토	검토 要 - 단일신청(수수료 관련)
제19조 명의변경	내용	디자인권 이전과 관련한 신청, 요건,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
	검토	검토 要 - 단일신청(수수료 관련)
제20조 성명/주소 변경	내용	단순 성명 및 주소 변경시 신청방법, 기재사항, 추가 증거제출 등
	검토	검토 要 - 단일신청(수수료 관련)
제21조 오류 정정	내용	출원·등록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한 정정 절차 및 요건
	검토	불일치 - 등록후 정정제도 無
제22조 기술지원/역량강화	내용	최빈국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역량강화 노력, 수수료 감면
	검토	(쟁점 有 : 기술지원/역량강화, 개도국 수수료 감면 의무화 여부)
제23조 이하 기타	내용	총회, 국제사무국, 발효, 폐기 등 기타 사항
	검토	불일치 없음

II. DLT-디자인보호법 주요 쟁점조항 검토

제3조 출원 기재사항 및 도면 표시·제출

□ 조약 주요 내용

○ 출원서를 통해 요구 가능한 기재사항 및 도면요건 규정

- (쟁점) 출원인·대리인 및 출원에 대한 일반적 정보 外 ‘**전통 문화표현 등의 출처공개**’가 추가되어 국가 간 입장 대립 상황

* 동 조항은 열거규정으로, 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재사항 및 요건은 출원서에서 요구 불가

□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비교

	디자인보호법	DLT 및 시행규칙
출원서 기재 사항	<p>(법 제37조) 출원인·대리인 성명 및 주소, 물품 및 물품류, 단독·관련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번호,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복수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수 및 일련번호, 우선권 주장 취지 및 최초 출원국, 최초출원일자</p> <p>(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허고객번호, 대리인번호, 부분디자인 여부, 화상디자인 용도</p>	<p>(조약 제3조) 출원 취지, 출원인·대리인 성명 및 주소, 송달·교신용 주소, 도면, 물품명칭, 우선권 주장 취지 및 증명서류, 공지에외 주장의 증거, 전통문화표현·전통지식·유전자원의 출처</p> <p>(규칙 제2조) 물품류, 청구항, 신규성에 대한 진술, 디자인의 설명, 창작자 신원 및 진정한 창작자라는 진술, 창작자가 출원인에 디자인을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양도증명서 또는 기타 증거, 출원인(법인)의 국적·거소국·영업소재국, 이전의 출원·등록 등 정보, 출원 비공개 또는 조기공개신청, 복수디자인 수, 보호기간, 수수료 납부 증거, 부분디자인, 분할출원 취지 및 최초 출원의 정보</p> <p>(규칙 제7조(11)) 관련디자인 출원 시 기본 디자인의 출원·등록번호, 대리인·출원인 등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등록번호 또는 기타 표시사항</p>

도면	<p>(법 제37조)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약, 디자인 일련번호 기재</p> <p>* 사진 또는 견본으로 갈음 가능</p>	<p>(규칙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그래픽 도면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 및 그 결합으로 제출 가능 · 컬러 또는 흑백 표현 가능 · 디자인 외 다른 요소가 없어야 하나, 점선·파선 또는 음영은 표시 가능 · 디자인을 완전히 표현하는 1개 이상의 도면 · 행정청은 특정 도면을 추가 요구 가능하며, 1개(전자출원) 또는 3개(서면출원) 이상의 도면 사본 요구는 불가
----	---	---

□ 검토: **불일치 없으나 쟁점 有**

- (출원서 및 도면) 디자인보호법 상 출원서 기재사항 및 도면 요건은 DLT 내 열거항목에서 벗어나지 않아 충돌 없음
 - 일부심사등록출원은 DLT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출원서에 기재 요구 가능
 - * DLT 참고 3.04: 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 관청이 정한 공식 서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도면 형식이나 도시방법, 사본 제출요건 등은 모두 DLT 충족
- (출처 공개) '전통문화표현, 전통지식 또는 생물학적·유전자원의 기원 또는 출처'가 DLT에 포함되었으나 임의사항으로 충돌 없음
 - 임의사항이더라도, 일부 국가가 이를 자국 법령으로 필수 요구할 경우, 국내출원인의 해외출원시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능
 - 따라서, 임의 기재사항이라도 **조약 삽입 반대 입장 고수 필요**
 - * 당초 임의규정으로 삽입 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우려

제4조

대리인 및 송달을 위한 주소

□ 조약 주요 내용

-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대리인 관련 요건 및 선임절차 규정
 - (재외자의 대리인)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체약당사자 영토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①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및 ②수수료의 단순 납부는 직접 수행 가능
 - * 다만 ①, ② 경우에도 송달·교신을 위한 체약당사자 영토 내 주소 요구 가능
 - (대리인 선임 절차) 체약당사자는 대리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권한 및 영역 내 주소, 별도 서류(위임장)* 요구 가능
 - * 대리인 및 출원인 등의 신원 기재, 대리 권한의 범위 제한 가능
 - (대리인 선임 보정)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재외자의 경우 2개월)의 보정 기간 부여 필요

□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 수행, 행정청 처분에 대해 소 제기 가능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 관련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 증명 필요

◎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위임자의 성명 및 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위임사항, 위임일자, 위임자의 서명 기재

제5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는 제출인(성명, 사건과의 관계) 및 대리인의 성명과 번호, 사건의 표시, 신고대상 대리인의 성명과 번호, 서명 기재

◎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의2(부적합한 출원서류의 소명기간) ①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따른 소명서 제출 지정기간은 1개월로 한다.

□ 검토: 불일치

- (재외자의 대리인) 디자인보호법은 재외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디자인에 관한 절차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불일치
 - 다만, DLT는 재외자의 절차 단독수행을 최초 출원시까지로 한정하며 수수료 납부에는 행정청 재량을 인정하여, 법 개정 시에도 최소 절차만 규정 가능
 - * DLT 참고 4.07: 출원일 이후 계약당사자는 절차 계속을 위해 일정 기한 내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 ** DLT 참고 4.09: “수수료의 단순 납부”라는 표현은 계약당사자가 수수료 납부에 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라도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모든 계약당사자는 특정 수수료 납부의 단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대리인 선임 절차) 특허법상 위임장 및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은 DLT 본 조항 및 제10조(서류제출)와 일치
- (대리인 선임 보정)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은 소명서 제출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나, 실무상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재외자에 대한 기간(2개월)도 충족하여 일치

제5조

출원일

□ 조약 주요 내용

- 아래 사항이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요구 불가
 - (기본 기재사항) 출원 취지(명·목적적 기재), 출원인의 신원, 충분히 명확한 도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 (추가 사항*)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특징이나 도면에 대한 설명, 청구항,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 추가 사항 요구를 위해서는 ①조약 가입 당시 자국 법률에 해당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②선언을 통해 WIPO 사무총장에 통지 필요

- 기재사항 및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의 보정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보정서 접수일을 출원일로 인정

□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p>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출원일은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 성명이나 명칭의 미기재 또는 불명확으로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미제출 또는 불명확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p>④제1항에 대해 지정기간 내 출원서가 보완된 경우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간주한다.</p> <p>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 검토: 불일치 없음

-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일 인정의 필수 요소(제38조①)는 DLT '기본 기재사항'과 일치하며, 보정 기간(1개월)도 요건 충족
- 출원료 납부는 출원일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제47조 규정 사항이므로, 별도 선언을 통한 통지도 불필요
- * 절차보완(제38조④)은 절차보완서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 절차보정(제47조)은 출원일 인정과 관계없음

제12조

기한의 구제

□ 조약 주요 내용

- 행정청이 정한 절차수행 기한*에 대해, 2개월 이상의 기간 연장 또는 절차 계속 부여 의무를 규정

* (예외) 이미 구제된 기한, 갱신수수료 납부기한, 행정청 내 심판원 또는 기타 재심기관의 절차기한, 당사자 간 절차기한, 동 조약 14조를 통해 규정된 우선권 정정·추가·회복 관련 기한

- (기간 연장) 행정청은 연장신청 가능시를 ①기한만료 前 또는 ②만료 後 중 선택 가능하며, 원 만료일부터 2개월 이상 연장
- (절차 계속) 기한만료 전에만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에 대해 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 인정 필요

- 기간 연장 또는 절차 계속 신청에 대한 거절 예고 시, 합리적 의견제출 기한 부여 필요

□ 디자인보호법 등의 관련조항

◎ 디자인보호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법 제38조제2항(출원 보완), 제47조(절차 보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 검토: 불일치

- 디자인보호법은 대상절차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기간은 DLT 규정내용(원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과 충돌 없음
- 다만, 디자인보호법에는 기한만료 이후 연장신청이나 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불일치
 - * 현 디자인보호법상 기간경과 구제는 정당한/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에만 적용(법 제18조 및 제19조)
 - ** (비교) 상표법은 거절이유(제55조③)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이유(제87조③)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만료일부터 2월 내 절차 계속 신청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함을 규정
- 법 개정을 통해 ①기한만료 후 연장신청을 가능하게 하거나, 현행법대로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만 가능하게 할 경우 ②절차 계속 및 권리 회복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제13조 권리회복

□ 조약 주요 내용

- 출원인·권리자의 기한* 미준수가 ①출원·등록 관련 권리 상실을 직접 초래**하였고 ②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권리 회복 의무를 규정
 - * (예외) 동 조약 제12조 및 동조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기한, 행정청 내 심판원 또는 기타 재심기관의 절차기한, 당사자 간 절차기한, 동 조약 14조를 통해 규정된 우선권 정정·추가·회복 관련 기한 등
 - ** DLT 참고 13.03은 ‘출원 수수료 납부 기한 미준수’를 예시로 언급
 - *** 비고의성까지 요건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행정청이 선택 가능

- (요건) 권리회복 신청에는 신청취지 및 서명, 기한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에 대한 증거 첨부
- (기한) 미준수 사유가 소멸한 지 2개월이 경과했거나, 해당 절차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 권리 회복 신청 거절 예고 시, 합리적 의견제출 기한 부여 필요

□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제47조(절차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9조(보정각하결정) 또는 제120조(등록거절·취소결정)에 따른 심판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기간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 등록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 내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불일치

- 절차수수료 및 등록료 미납 등 절차보정 기한 미준수는 법 제18조② 및 제84조①을 통해 구제 가능하므로 일치
- 다만, **재심사 청구**의 추후 보완은 불가하여 조약과 불일치, 제19조 등에 규정 신설 필요

제14조

우선권 주장의 정정·추가 및 회복

□ 조약 주요 내용

- (정정·추가) 우선권 주장 보정 외에도 우선권 주장 교체, 신규 우선권 주장 추가 등을 허용하여, 출원 시 주장한 우선권의 우선일보다 더 빠른 우선일 확보도 가능
 - (요건) 정정·추가 신청에는 신청취지 및 서명을 기재하며, 최초출원의 우선기간 만료일 이전에 후출원이 출원되었을 것
 - (기한) 해당 신청은 최초 우선일과 변경된 우선일 중 더 이른 날로부터 6개월 내 제출 가능하되, 후출원일부터 2개월 내
- (회복) 우선기간 만료 이후 출원된 후출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의 회복 허용
 - * 비고의성까지 요건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행정청이 선택 가능
 - (요건) 회복 신청에는 신청 취지 및 서명, 우선기간 미준수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에 대한 증거 제출
 - (기한) 우선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복 신청 제출

< DLT에 따른 우선권 정정·추가 및 회복신청 가능 기간 >

Ⓐ 제1국 출원(우선일)

Ⓑ 제2국 출원(후출원일)

Ⓒ 우선기간 만료일

우선기간(6月)		
	정정·추가신청기간(2月)	회복신청기간(1月)

□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신설>⑤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출원일로부터 3개월)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제5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신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검토: 개정안과 (부분)일치

- (정정·추가) 계약당사자는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허용 의무가 있고*,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우선권의 정정을 허용
 - * Article 14(1):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 제51조⑤는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개월의 추가 기간 부여
- 제51조의2는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인정
- (회복) 개정안 제51조의3은 정당한 사유로 기간(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추가 기간 부여
- (추가 검토대상) DLT에서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 개정법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의 경우에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법 제51조의 2)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불일치.

제15~16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및 변경·취소

□ 조약 주요 내용

- 계약당사자가 실시권·담보권의 등록을 규정하는 경우, 등록 및 그 등록의 변경·취소에 대해 요구 가능한 최대 요건과 절차

신청 구분	규정 가능한 기재사항 및 요건, 증명서류
변경·취소	<p>(요건)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권리자의 송달 또는 교신용 주소,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 (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송달 또는 교신용 주소, (실시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 및 설립 국가명, (실시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국적이나 거주국가명 및 영업소 소재 국가명,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번호, 등록될 변경사항의 성격과 범위,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p> <p>(증명서류) 실시권의 등록 변경·취소를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또는 권리자와 실시권자 양측이 서명한 실시권 변경에 대한 비인증 진술서</p>
등록	<p>(요건) 상기 변경·취소 요건에 더하여, 복수디자인 중 일부에만 실시권이 부여된 경우 해당 디자인 번호, 전용·통상·독점실시권 여부, 일부 지역에만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명시적 기재, 실시권의 기간</p> <p>(증명서류) 실시권이 계약 체결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발췌본 중 하나, 계약이 아닌 법률·법원 결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실시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공동권리자의 명시적 동의</p>

* 상기 사항은 담보권의 등록·변경·취소신청에도 준용

- 실시권 등록 신청 시, 해당 산업디자인의 ①등록증명서 및 ②실시권 계약의 재무조건 기재는 요구 불가

□ 디자인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검토: **불일치**

- (실시권) 디자인보호법상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만 설정 등 효력이 발생하므로 DLT에 규정된 요건 및 절차 준수 필요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및 제38조는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 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일치**
- (담보권)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 (기타) 단일신청시, 수수료에 대한 언급 없음. 자국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

제22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 조약 주요 내용

- 최빈·개도국에 대한 ①WIPO의 기술지원·역량강화 원칙 및 지원내용·수단과, ②각 체약당사자의 지원 노력 필요성 규정
- 각 체약당사자는 최빈·개도국 국적이거나 거주하는 자연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제도 도입 노력*

* 현 DLT 문안에는 ‘노력하여야 한다(shall endeavor)’ 또는 ‘권장된다(are encouraged to)’로 표현되어 회원국 의무규정은 아님

□ 검토: 불일치 없으나 쟁점 有

- (각국 입장) 선진국 그룹은 주로 해당 내용을 결의안 형태로 별도 규정할 것을 요구, 개도국 그룹은 조약 본문에 WIPO 및 체약당사자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
- (우리 입장) 규정 자체는 조약 본문 형태로도 수용 가능하나, 수수료는 행정청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의무규정 수용은 불가

III. 향후 계획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상표디자인협회 등에 조약 경과 및 가입시 법 개정내용 등을 의견 조회(5월)
- DLT 상세내용에 관해서는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하고 업계·학계 의견 수렴

□ 정책연구용역 착수(5월) 및 외교회의 대응 T/F 운영(5월~)

- 디자인법 조약(안)과 우리 법 정합성 검토, 영향도 분석 등을 통해 조약 가입 필요성 내지 시급성 분석
- 청내 유관 부서들과 협력하여 외교회의 대응 T/F를 구성하고 쟁점조항별 심층분석 진행

원문(Draft Articles, Draft Regulations)은 아래 인터넷 주소 참조 :
<https://www.wipo.int/diplomatic-conferences/en/design-law/index.html>

Draft Articles	Regulations
제1조 정의	제1조 정의
<p>본 조약의 목적상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한,</p> <p>(i) “계약당사자”란 이 조약의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말한다.</p> <p>(ii) “행정청” : 산업디자인 등록을 위임받은 계약당사자의 관청을 말한다.</p> <p>(iii) “등록” : 행정청의 산업디자인 등록 또는 산업디자인 특허 부여를 말한다.</p> <p>(iv) “출원” : 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p> <p>(v) “관련 법률” : 계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정부간기구인 경우 해당 정부간기구에서 운영되는 법적 문서를 말한다.</p> <p>(vi) “산업디자인” : 출원이나 등록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복수디자인)를 포함한다.</p> <p>(vii) “사람/자” :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지칭한다.</p> <p>(viii) “행정절차” :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행정청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p> <p>(ix) “서류제출” : 모든 출원서, 신청서, 신고서, 선언서, 서신 또는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제출되는 기타 정보를 말한다.</p> <p>(x) “공보” : 정보를 보관하는 매체와 관계없이,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 있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청이 관리하는 자료집을 의미한다.</p> <p>(xi) “출원인” : 등록출원하는 자, 또는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출원을 제기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공보에 기재되는 자를 의미한다.</p> <p>(xii) “디자인권자” : 공보에 등록권자로 기재된 자를 의미한다.</p> <p>(xiii) “파리협약” :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후 개정되고 수정된 「산업재산의</p>	<p>(1) [이 시행규칙에 정의된 약어] 이 시행규칙의 목적상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p> <p>(i) “조약” : 디자인법 조약(DLT)을 말한다.</p> <p>(ii) “조” : 조약의 조항을 말한다.</p> <p>(iii) “로카르노 분류” : 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서명되고 개정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국제 분류인, 로카르노 협정에 의한 분류를 의미한다.</p> <p>(iv) “전용실시권” : 실시권이 오직 한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부여되며, 디자인권자가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하고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실시권을 말한다.</p> <p>(v) “독점실시권” : 실시권이 오직 한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부여되며, 디자인권자가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실시권을 말한다.</p> <p>(vi) “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가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실시권을 말한다.</p> <p>(2) [이 조약에 정의된 약어] 조약 제1조에서 정의된 약어는 본 시행규칙에서도 동일한 의미이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말한다.</p> <p>(xiv) “실시권” :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말한다.</p> <p>(xv) “실시권자” :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p> <p>(xvi) “시행규칙” : 제23조에 언급된 시행규칙을 말한다.</p> <p>(xvii) “외교회의” : 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계약당사자들의 회의를 말한다.</p> <p>(xviii) “총회” : 제24조에 언급된 총회를 말한다.</p> <p>(xix) “비준서” : 수락서와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p> <p>(xx) “기구(WIPO)” :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p> <p>(xxi) “국제사무국” : WIPO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p> <p>(xxii) “사무총장” : WIPO의 사무총장을 말한다.</p> <p>(xxiii) “조”, “항”, “호” 또는 “목” :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p> <p>【(xxiv) 조약 및 규칙에서 유효 표시된 기간 제한은 계약당사자가 자국 법률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조의2 일반원칙</p> <p>(1) [산업디자인 실체법에 대한 비제한] 이 조약 또는 시행규칙의 어느 내용도, 계약당사자가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실체법 규정을 제정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p> <p>(2) [다른 조약들과의 관계] 이 조약의 어느 내용도, 다른 조약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상호 의무로부터 이탈시키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 본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p> <p>(1) [적용] 이 조약은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에 제출되는 국가 및 지역 출원[및 그 분할출원]에 적용된다.</p> <p>(2) [산업디자인] 이 조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디자인으로서 등록될 수 있거나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 출원</p> <p>(1) [출원서 내용, 수수료]</p> <p>(a) 계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과 같은 기재 사항이나 요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등록 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조 출원에 관한 세부내용</p> <p>(1) [조약 제3조에 따른 추가 요건] 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 계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의</p>

Draft Articles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 출원인 성명 및 주소 (iii)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iv) 제4조제3항에 따른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 그 주소 (v)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업디자인의 도면 (vi)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 및 물품들의 명칭 (vii) 출원인이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 취지 및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요구되는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viii) 출원인이 파리협약 11조를 주장하는 경우,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시회에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들이 공개되었다는 증거서류 	<p>사용과 관련된 물품이 속한 로카르노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 청구항(특허) (iii) 신규성에 대한 진술 (iv) 디자인 설명 (v) 산업디자인 창작자의 신원 (vi) 창작자 자신이 진정한 산업디자인 창작자라는 진술 (vii)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경우,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양도증명서 또는, 출원인에게 디자인이 이전되었음을 행정청이 인정하는 기타 증거 (viii)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근거법에 따른 법인의 법적 성격과 해당 국가 내 행정구역 (ix) 출원인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적,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주된 거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 (x) 산업디자인의 등록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출원인이 알고 있는 모든 이전의 출원/등록, 또는 기타 정보의 기재
<p>Option A</p>	
<p>【(ix) 산업디자인에 활용 또는 포함된 전통문화 표현, 전통지식 또는 생물학적/유전 자원의 기원 또는 출처에 대한 공개】</p>	
<p>Option B</p>	
<p>【(ix) 산업디자인의 등록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출원인이 인지하고 있는 이전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표시 또는 기타 정보 출처에 대한 공개】</p>	<p>Option A</p> <p>【(ix) 산업디자인에 활용 또는 포함된 전통문화 표현, 전통지식 또는 생물학적/유전 자원의 기원 또는 출처에 대한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x) 시행규칙에서 정한 추가 기재사항 또는 요건 	<p>Option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출원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p>【(ix) 산업디자인의 등록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출원인이 인지하고 있는 이전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표시 또는 기타 정보 출처에 대한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타 요건의 금지] 출원 관련하여, 동조 제1항 및 제10조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은 요구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xi) 출원인이 일정기간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를 원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복수디자인 출원]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xii) 출원이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된 산업디자인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증거] 계약당사자는 출원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이 출원서에 포함된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진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xiii) 출원의 보호기간 (xiv) 계약당사자가 출원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증거 (xv) 해당하는 경우, 부분디자인의 기재

Draft Articles	Regulations
	<p>(xv) 해당하는 경우, 조기 공개 신청</p> <p>(2) [분할 출원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분할 출원인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분할 출원의 취지 기재</p> <p>(ii)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p> <p><u>[(3) [부분 디자인] 계약당사자는 물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구현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허용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 도면에 관한 세부내용</p> <p>(1) [도면 형식]</p> <p>(a) 도면은 다음의 형식 가운데 출원인의 선택에 따른다.</p> <p>(i) 사진</p> <p>(ii) 그래픽 도면</p> <p>(iii) 기타 행정청에 의해 인정된 시각적 표현</p> <p>(iv) 상기 사항의 결합</p> <p>(b) 도면은 출원인 선택에 따라 컬러 또는 흑백으로 표현될 수 있다.</p> <p>(c) 도면은 다른 요소 없이 단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p> <p>(2) [도면에 관한 사항] 제(1)항제(c)호에도 불구하고, 도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i) 디자인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디자인 설명에서 특정되거나 점선 또는 파선으로 표시된 사항</p> <p>(ii) 3차원 디자인의 부피감 또는 윤곽을 보여주기 위한 음영</p> <p>(3) [도면의 표시]</p> <p>(a) 산업디자인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산업 디자인을 완전히 보여주는 하나의 도면 또는 여러 개의 다른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b) 제(a)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들)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도면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도면에서 도출되지 않고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을 나타내는 추가 도면은 허용되지 않는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4) [도면 사본의 수] 전자적으로 출원시 1개 이상의 도면 사본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출원시 3개 이상의 도면 사본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4조 대리 :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p> <p>(1) [절차수행 대리인]</p> <p>(a) 계약당사자는 행정절차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대리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p> <p>(i)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p> <p>(ii) 해당 계약당사자에 의해 규정된 영역 내의 주소 제공</p> <p>(b) 모든 행정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제(a)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을 준수한 대리인에 의한 행위나 그 대리인과 관련한 행위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행위로써 효력이 있다.</p> <p>(2) [강제대리]</p> <p>(a) 제(b)호에 따라, 대리인이 임명된 지역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계약당사는 행정절차 수행을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b) 계약당사자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의 단순 납부를 행정청에 직접 할 수 있다.</p> <p>(3) [송달 또는 교신용 주소]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대리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당사자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계약당사자 내의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를 갖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4) [대리인 선임]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행정청에 제출된 대리인 선임을 수리하여야 한다.</p> <p>(5) [기타 요건의 금지] 제10조의 요건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루는 사항들의 준수를 위하여 어느 계약당사자도 이들 항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4조 대리인,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p> <p>(1) [조약 제4조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 ; 위임장]</p> <p>(a) 대리인이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이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뿐만 아니라,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도 기재되어야 한다.</p> <p>(b) 위임장에서 하나 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이 확인되거나, 임명자가 표시한 모든 예외에 따른 경우, 위임장은 임명자의 현존 또는 미래의 모든 출원 및(또는) 등록과 관계 될 수 있다.</p> <p>(c) 위임장은 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특정 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대리인이 출원을 철회하거나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위임장에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조약 제4조제(6)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4조 제(6)항에 따른 기한은,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계약당사자 영토 내에 있는 경우 보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주소가 계약당사자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는 보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3) [증거] 행정청이 제(1)항에 따른 모든 서류의 기재 사항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한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6) [통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 가운데 계약당사자가 적용한 1개 이상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 내에 그러한 요건을 보정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7) [요건 미준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 가운데 계약당사자가 적용한 1개 이상의 요건이 시행규칙이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자국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출원일</p> <p>(1) [허용요건]</p> <p>(a) 제(b)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기재사항 및 요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행정청이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p> <p>(i) 당해 사항들이 출원을 의도한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재</p> <p>(ii)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p> <p>(iii) 산업디자인의 충분히 명확한 도면</p> <p>(iv)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기재</p> <p>【(v) 해당 법률에 규정된 추가적 표시 또는 요소】</p> <p>(b) 제(a)호에서 언급된 기재사항 및 요건의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만이 산업디자인의 충분히 명확한 도면 【및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과 함께 접수된 경우거나,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접수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그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p> <p>【(2) [허용되는 추가 요건]</p> <p>(a) 계약당사자의 조약 가입 당시 법률에 따라 출원일 부여를 위해 제(b)호에서 명시된 조건들을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선언을 통해 해당 조건들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b) 제(a)호에 따라 통지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p> <p>(i)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산업디자인 사용과 관련된 물품(들)의 명칭</p> <p>(ii)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징 또는 간략한 설명</p> <p>(iii) 청구항</p> <p>(iv)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 출원일의 세부사항</p> <p>제5조제(4)항에 따른 기한은 행정청이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c) 제(a)호에 따라 통지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p> <p>(3) [기타 요건의 금지] 제(1)항제(a)호 【및 제(2)항제(b)호】 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기재사항이나 요건도 출원일 인정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p> <p>(4) [통지 및 기한] 행정청이 출원서를 접수할 당시에 출원이 제(1)항 【및 제(2)항제(b)호】 에 따른 요건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러한 요건을 준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5) [추후 요건 보정시의 출원일] 만약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출원인이 해당 요건들을 준수한 경우, 출원일은 늦어도 제(1)항 【및 제(2)항제(b)호】 에 따라 계약국이 요구한 모든 기재사항 및 요건들이 관청에 접수된 날이 된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출원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공지에외 기간</p> <p>【(1)】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의 6개월 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공개되었어도, 다음에 의한 공개라면 신규성 및(또는) 독창성을 상실하지 않는다.</p> <p>(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p> <p>(i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 (악의·부당한 행위로 인한 정보 취득 포함)</p> <p><u>【(2)(a)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당시의 법률이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제1항에 언급된 행위 이외의 행위에 의하여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는 선언을 통하여 그 유예기간이 그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만 발동되도록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u></p> <p>(b) (가)항에 따라 통지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p> <p><u>(i) 국가비상사태 또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익을 목적으로 최초로 공개하는 산업 디자인</u></p> <p><u>(ii) 국제 전시회, 규정된 학술 또는 기술 활동에서 최초 공개된 산업 디자인</u></p> <p><u>(iii) 출원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산업</u></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디자인을 공개하는 행위</p> <p>(c) (가)항에 따른 모든 신고사항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p> <p>【제6조 공지에외 기간 (일본 대표단 제안)</p> <p>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의 6개월 또는—12개월의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공개되었어도, 다음에 의한 공개라면 신규성 및(또는) 독창성을 상실하지 않는다.</p> <p>(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p> <p>(i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작·간접적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 (악의·부당한 행위로 인한 정보 취득 포함)】</p> <p>【제6조 공지에외 기간 (인도 대표단 제안)</p> <p>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의 6개월 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공개되었어도, 다음에 의한 공개라면 신규성 및(또는) 독창성을 상실하지 않는다.</p> <p>—(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p> <p>—(i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작·간접적으로 산업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 (악의·부당한 행위로 인한 정보 취득 포함)</p> <p>(i) <u>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통지된 전시회에서 창작자 또는 그의 소유권 승계인에 의한 경우, 또는</u></p> <p>(ii) <u>남용의 결과를 포함하여 산업 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사람이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u></p> <p>【제6조 공지에외 기간 (미국 대표단 제안)</p> <p>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의 6개월 또는—12개월의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u>공중에</u> 공개되었어도, 다음에 의한 공개라면 등록적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규성 및(또는) 독창성을 상실하지 않는다.</p> <p>(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p> <p>(ii)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작·간접적으로</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산업디자인에—관한 <u>개시된</u> 정보를 취득한 자 (악의·부당한 행위로 인한 정보 취득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창작자 명의 출원</p> <p>(1) [창작자 명의의 출원 요구]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창작자 명의로 출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창작자 명의로 출원시 형식] 계약국이 산업디자인 창작자 명의로 출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출원서에 창작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족되어야 한다.</p> <p>(i) 창작자의 성명이 출원인과 일치할 것</p> <p>(ii) 출원시 창작자에 의해 서명된 양도증서를 함께 제출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하나 이상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p> <p>(1)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하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출원(이하 '최초 출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국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p> <p>(i)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최초 출원을 보정할 것</p> <p>(ii) 최초 출원을 분할함으로써 계약국이 정한 요건이 준수되는 경우, 최초 출원을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이하 '분할출원')</p> <p>(2) [분할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권] 분할출원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에 따른 이익을 유지한다.</p> <p>(3) [수수료] 출원 분할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산업디자인 공개</p> <p>(1)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기간에 따라, 관련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이 비공개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p> <p>(2)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 및 수수료]</p> <p>(a) 계약당사자는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을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b) 제(a)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조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p> <p>조약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최소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요구할 수 있다.</p> <p>(3) [비공개 유지 신청건에 대한 공개 신청] 제(2)항 제(a)호에 따라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을 한 경우,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언제라도 산업디자인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9조 bis 보호기간 (미국 대표단 제안) 체약당사자는 산업 디자인에 대해 (a) 제출일 또는 (b) 부여 또는 등록일 중 하나로부터 최소 15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9조 bis 보호기간 (나이지리아 대표단 제안) 체약당사자는 헤이그 협정 제17조 또는 TRIPS 협정 제26조를 따르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p>	
<p>【제9조 ter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미국 대표단 제안)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p> <p>(a) 전자 신청 시스템</p> <p>(b) 등록된 산업 디자인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야 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 정보 시스템】</p> <p>【제9조 quater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나이지리아 대표단 제안)</p> <p>(1) 체약당사자는 전자 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p> <p>(2) 체약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 정보 시스템이나 등록된 산업 디자인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p> <p>【제9조 quinquies 공중이 접근 가능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의 예외 (나이지리아 대표단 제안)</p> <p>(1) 전통지식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을 포함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전통지식 또는 전통문화표현물의 IPLC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야 한다.</p> <p>(2) 등록 산업 디자인에 대한 공개적으로</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계약당사자는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IPLC)가 전통지식 또는 전통 문화표현물에 기반한 디자인의 포함을 반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서류제출</p> <p>(1) [서류제출 형식 및 전송수단] 계약당사자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적 형식의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다른 형식 및 전송수단에 따른 서류제출도 선택할 수 있다.</p> <p>(2) [제출 언어]</p> <p>(a) 계약당사자는 모든 서류를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b) 서류가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식 번역가나 대리인에 의해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번역된 서류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c) 계약당사자는 본 조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 번역에 대한 선서/공증/인증/공인 또는 기타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p> <p>(d) 제(c)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번역 서류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3) [연락처 등] 계약국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출원인/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제출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교신을 위한 주소</p> <p>(ii) 송달을 위한 주소</p> <p>(iii) 기타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소 또는 연락처</p> <p>(4) [서면 서류제출시 서명]</p> <p>(a) 서면으로 서류제출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출원인/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서명을 인정하여야 한다.</p> <p>(b) 준사법 절차 관련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대한 선서/공증/인증/공인 또는 기타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 서류제출에 대한 세부사항</p> <p>(1) [조약 제10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p> <p>(a)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0조제(3)항제(i)목에 따른 교신용 주소와 제10조제(3)항제(ii)목에 따른 송달용 주소가 계약당사자가 규정한 영토 내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b)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연락처에 대해,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전화번호</p> <p>(ii) 팩스번호</p> <p>(iii) 이메일 주소</p> <p>(2) [서면 서류제출시 서명 기재] 계약당사자는 자연인의 서명이 다음과 같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서명인의 선택에 따라, 서명인의 성과 이름, 또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문자로 기재</p> <p>(ii) 제출서류에서 서명인의 자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그 서명인의 자격에 대한 기재</p> <p>(3) [서명일]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서명일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재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 서명일은 행정청에 서명된 서류가 접수된 때, 또는 계약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접수한 날 이전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p> <p>(4) [서면 서류제출시 서명]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서명된 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서명을 요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야 한다.</p> <p>(i) 제(iii)목의 요건에 따른 자필 서명의 허용</p> <p>(ii) 자필 서명 대신 다른 형식의 서명 허용 (인쇄·스탬프 서명, 도장·바코드 라벨 등)</p> <p>(iii) 제출서류에 서명한 자연인이 계약당사자</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c) 제(b)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그 서명의 진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5)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을 허용한 경우, 시행규칙이 규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6) [기타 요건의 금지] 계약당사자는 제(1)항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p> <p>(7) [서류 기재사항] 계약당사자는 서류제출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 가운데 1개 이상의 기재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8) [대리인과의 서류제출 수단] 이 조항은 출원인, 디자인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그들의 대리인 간의 서류제출 수단을 규제하지 않는다.</p>	<p>국민이고 계약당사자 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또는 제출서류에 서명한 법인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계약당사자 내에 영업소의 주소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5) [서면 제출서류의 서명에 대한 선서/공증/인증/공인 등] 조약 제10조제(4)항제(b)호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가 출원 철회 또는 등록 포기과 관련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대한 선서/공증/인증/공인 또는 기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6)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시 서명]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허용된 그래픽 또는 다른 표현으로 서명된 서류에 대하여 서명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p> <p>(7)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시 원본]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 모두를 준수하여 그 서류의 원본을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이전의 서류제출을 증명하는 서신 첨부</p> <p>(ii) 행정청이 전자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 이내에 원본 제출</p> <p>(8)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시 인증] 전자문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전자문서가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9) [접수일]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기관에 실제 서류가 접수된 때, 또는 수수료가 납부된 때 가운데 언젠가를 접수일로 정할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p> <p>(i) 행정청의 지사 또는 지점</p> <p>(ii) 계약당사자가 정부간기구일 경우, 그 계약당사자 행정청을 대리하는 국가 기관</p> <p>(iii) 우체국</p> <p>(iv) 계약당사자가 특정한 배송 업체</p> <p>(v) 행정청의 지정주소 이외의 주소지</p> <p>(10) [전자문서]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게 제출된 경우, 제(9)항에 따라 서류를 접수한 날이</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채약당사자 행정청의 접수일이 된다.</p> <p>(1) [조약 제10조제(7)항에 따른 서류 기재사항]</p> <p>(a) 채약당사자는 서류제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출원인, 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p> <p>(ii) 관련디자인 출원시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 번호</p> <p>(iii) 출원인, 디자인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등록번호 또는 기타 표시사항</p> <p>(b) 채약당사자는 행정절차 수행을 위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p> <p>(ii) 위임장</p> <p>(iii) 대리인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번호 또는 기타 표시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조 출원번호 없는 출원의 식별</p> <p>(1) [식별방법] 출원이 출원번호에 의해 식별되어야 하나 아직 출원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출원번호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때에는 출원이 식별된 것으로 간주한다.</p> <p>(i) 행정청이 발급한 임시 출원번호가 있는 경우</p> <p>(ii) 출원서 사본이 있는 경우</p> <p>(iii) 산업디자인 도면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출원을 접수한 일자를 기재하였고, 출원서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타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p> <p>(2) [기타 요건 금지] 아직 출원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번호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채약당사자는 출원의 식별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른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조 갱신</p> <p>(1) [갱신 신청 및 수수료]</p> <p>(a) 채약국이 보호 기간의 갱신을 두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조 갱신에 대한 세부사항</p> <p>조약 제11조제(2)항의 목적상 갱신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갱신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시작하여, 갱신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에</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포함하여 갱신을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갱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표시</p> <p>(ii) 디자인권자의 주소 및 성명</p> <p>(iii) 갱신 관련 등록번호</p> <p>(iv) 갱신 신청에 따른 보호기간</p> <p>(v)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p> <p>(vi) 송달 및 교신을 위한 주소(디자인권자가 주소가 있는 경우)</p> <p>(vii) 등록된 산업디자인 일부에 대한 갱신이 가능하고 그러한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갱신 신청된(또는 신청하지 않은) 산업디자인 등록번호의 기재</p> <p>(viii) 디자인권자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갱신이 가능하고 그러한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 및 주소</p> <p>(b) 계약당사자는 갱신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행정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 기간] 계약당사자는 관련법률에 따른 갱신 기간 내에 행정청에 제(1)항제(a)호에 따른 갱신 신청과 제(1)항제(b)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최소 기간을 따른다.</p> <p>(3)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갱신 요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10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p>	<p>종료된다. 만약 갱신 만료일 이후에 갱신 신청 또는 갱신 수수료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및 수수료 납부에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기한의 구제</p> <p>(1) [기한 연장] 계약당사자는 행정절차 수행에 대해 행정청이 정한 기한에 대하여, 다음 중 계약당사자가 선택한 시기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이 제출된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만큼의 기한 연장을 제공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p> <p>(i)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p> <p>(ii) 그 기한은 만료되었으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한 전까지</p> <p>(2) [절차의 계속]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계약당사자가 제(1)항제(ii)목에 따른 기한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조 기한의 구제에 대한 세부사항</p> <p>(1) [조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건]</p> <p>(a)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p> <p>(ii)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연장되는 기한의 특정</p> <p>(b) 기한 만료 후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행정절차의 모든 요건이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준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조약 제12조제(1)항의 기간 및 기한]</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절차의 계속이나, 필요한 경우,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 회복을 인정하여야 한다.</p> <p>(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그러한 취지의 신청을 제출한 경우</p> <p>(ii) 그 신청이 제출되고, 그 기한이 적용되는 위 절차에 대한 모든 요건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된 경우</p> <p>(3) [예외]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의 계속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p> <p>(4)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5) [기타 요건 금지] 본 조약 또는 시행규칙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된 구제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p> <p>(6) [거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거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합리적인 기한 내에 부여하지 않고서는 거절될 수 없다.</p>	<p>(a) 조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b) 조약 제12조제(1)항제(ii)목에서 언급된 기한은,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3) [조약 제12조제(2)항제(i)목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2조제(2)항제(i)목에서 언급된 기한의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p> <p>(ii) 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연장되는 기한의 특정</p> <p>(4) [조약 제12조제(2)항제(ii)목에 따른 신청서 제출 기한] 조약 제12조제(2)항제(ii)목에 따른 기한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행정청에서 규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행정청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5) [조약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외]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요구받지 않는다.</p> <p>(i) 조약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구제된 기한의 2차 또는 후속 구제</p> <p>(ii) 조약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또는 조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에 대한 구제</p> <p>(iii) 갹신 수수료 납부 기한에 대한 구제</p> <p>(iv) 행정청 내에 설치된 심판원 또는 다른 재심 기관의 절차 기한의 구제</p> <p>(v) 당사자 간 절차 기한의 구제</p> <p>(vi) 조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기한의 구제</p>
<p>제13조 행정청이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p> <p>(1) [권리회복]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행정청에 대한 절차에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기한 미준수가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권리의 상실을 직접 초래한 경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이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규정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p>	<p>제11조 조약 제13조에 따른 권리회복에 대한 세부사항</p> <p>(1) [조약 제13조제(1)항제(i)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제13조제(1)항제(i)목의 신청에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조약 제13조제(1)항제(ii)목의 기한] 조약 제13조제(1)항제(ii)목에 따른 신청 및 요건 준수를 위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권리회복의 취지의 신청을 제출할 것 (ii) 그 신청이 제출되고, 그 기한이 적용되는 위 절차에 대한 모든 요건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될 것 (iii)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그 신청에 기재할 것 (iv)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이 비고의임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 <p>(2) [예외] 제(1)항에 따른 권리 회복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p> <p>(3)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4) [증거] 계약당사자는 제(1)항제(iii)목에서 언급된 사유를 뒷받침 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5)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합리적 기간 내에서 신청인에게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신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해당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개월 이상 (ii) 해당 절차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또는 갱신 수수료 미납과 관련된 신청의 경우 과리협약 제5조의2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p>(3) [조약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외] 조약 제13조제(2)항에서 언급된 예외사항은 다음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조약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또는 조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기한 (ii) 행정청 내에 설치된 심판원 또는 다른 재심 기관의 절차 기한 (iii) 당사자 간 절차 기한 (iv)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일을 부여할 수 있는 선언서의 제출 기한 (v) 조약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출원(이하 '후출원')과 관련한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행정청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ii) 당해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iii)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된 우선기간 만료일보다 늦지 않은 경우 (2) [후출원의 지연] 선출원으로부터 우선권 주장(된)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만료일 이후이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인 경우, 계약당사자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조 조약 제1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에 대한 세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약 제14조제(1)항(i)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제(1)항(i)목에 따른 신청서에 출원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약 제14조제(1)항(ii)목에 따른 기한] 조약 제14조제(1)항제(ii)목에서 언급된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 우선일이나 변경된 우선일 중 이른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p>【(3) [예외]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14조</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경우에 우선권을 회복【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p> <p>(i) 행정청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p> <p>(ii) 당해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p> <p>(iii) 당해 신청에 우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된 경우</p> <p>(iv)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지연이 비의도적이었음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p> <p>(3)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4) [증거]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제(2)항제(iii)목에 따른 사유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5)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청인에게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합리적 기간 내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신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없다.</p>	<p>제1항 (i)호에 언급된 요청이 신청의 실질적 심사가 완료된 후에 접수된 경우】</p> <p>(4) [조약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14조제(2)항 전문 및 제14조제(2)항(ii)목에서 언급된 기한은 우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p> <p>(5) [조약 제14조제(2)항(i)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제(2)항(i)에서 언급된 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출원인에 의해 서명되었을 것</p> <p>(ii)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 청구를 포함할 것</p>
<p>【제14조bis 전자적 우선권 서류 교환 (미국 대표단 제안)</p> <p>계약당사자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5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p> <p>(1) [실시권 등록 신청에 대한 요건] 관련 법률에서 실시권의 등록을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할 것</p> <p>(ii)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p> <p>(2) [수수료] 실시권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3) [단일 신청] 실시권이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계되어 있으나, 모든 등록번호들이 신청에 기재되어 있고, 모든 등록에 대하여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가 동일하며, 모든 등록에 대한 실시권의 범위가 신청에 기재되어 있으면, 단일 신청으로 충분하다.</p>	<p>제13조 실시권담보권 등록 신청, 또는 실시권담보권 등록의 변경취소 신청에 관한 요건의 세부사항</p> <p>(1) [신청내용]</p> <p>(a)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5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권 등록 신청이, 다음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p> <p>(ii)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p> <p>(iii) 권리자가 송달 주소 또는 교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소</p> <p>(iv)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p> <p>(v) 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4) [기타 요건 금지]</p> <p>(a) 실시권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0조에 언급한 것 이외의 요건은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p> <p>(i)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 증명서 제출</p> <p>(ii) 실시권 계약의 재무조건 기재</p> <p>(b) 제(a)호는 실시권 등록외에 관련 법률에 따른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 (세무/재정당국의 요청을 포함하여)를 침해하지 않는다.</p> <p>(5) [증거] 신청서 또는 증명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6) [출원과 관련한 신청]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실시권 등록 규정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을 출원과 관련한 실시권 등록 신청에 준용한다.</p> <p>(7) [담보권 등록 신청] 제(4)항제(a)호제(ii)목을 제외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담보권 등록 신청에 준용한다.</p>	<p>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p> <p>(vi) 실시권자가 송달 주소 또는 교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소</p> <p>(vii) 실시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 및 설립 국가명, 그리고 가능한 경우 법인이 설립된 행정지역명</p> <p>(viii) 실시권자가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 국가명, 실시권자가 자신의 거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그리고 만약 실시권자가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명</p> <p>(ix)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번호</p> <p>(x) 등록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실시권이 부여되지는 않은 경우, 실시권이 부여된 산업디자인의 번호</p> <p>(xi) 실시권이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독점실시권인지 여부</p> <p>(xii) 실시권이 등록에 의해 일부 지역에만 관련 있는 경우, 그 일부 지역에 대한 명시적 기재</p> <p>(xiii) 실시권의 기간</p> <p>(b) 조약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권 등록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아래의 기재사항 또는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제(a)호의 제(i)목 내지 제(ix)목까지 명시된 기재사항</p> <p>(ii) 등록될 변경사항의 성격과 범위, 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p>
<p>제16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취소 신청</p> <p>(1) [실시권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신청 요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실시권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p> <p>(i)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할 것</p> <p>(ii)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p> <p>(2) [담보권 등록의 취소 신청 요건] 담보권의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3) [기타 요건]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실시권의 등록 변경·취소 신청 및 담보권의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p>	<p>(a) 실시권이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 신청에 【신청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계약서 사본. 사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공공기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행정절차 진행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원</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계약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증될 것</p> <p>(ii) 실시권 및 그 범위, 당사자를 명시한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된 계약서의 발췌본. 발췌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공공기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행정절차 진행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당해 계약서의 진정한 발췌본인 것으로 인증될 것</p> <p>(b)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그러한 공동권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실시권 문서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c) 실시권이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이 아닌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청시 실시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문서를 발급한 기관, 공증인, 다른 공공관할 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행정절차 진행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 문서와 일치함을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3) [실시권의 등록 변경을 위한 첨부서류]</p> <p>(a)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등록 변경 신청에 대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실시권의 등록 변경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p> <p>(ii) 권리와 실시권자 양측이 서명한, 실시권 변경에 대한 비인증 진술서</p> <p>(b)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그러한 공동권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실시권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4) [실시권의 등록 취소를 위한 첨부서류]</p> <p>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실시권의 등록 취소를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p>

Draft Articles	Regulations
	(ii) 권리자와 실시권자 양측이 서명한, 실시권 취소에 대한 비인증 진술서 (5) [담보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담보권의 등록 및 그에 대한 변경·취소 신청에 준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p> (1) [산업디자인 등록과 보호의 유효성] 계약 당사자의 행정청 또는 다른 기관에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록의 유효성 또는 산업디자인 보호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실시권자의 특정 권리]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자가 계약당사자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실시권의 대상인 산업디자인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거나, 디자인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의 조건으로 실시권 등록을 요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조 실시권의 표시</p>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산업디자인이 실시권에 의해 사용된다는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이나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9조 명의변경 신청</p> (1) [신청요건] (a) 디자인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새로운 디자인권자에 의한 명의변경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b) 계약당사자는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명의변경 등록을 위한 증빙서류 요건] (a) 계약에 의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합병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합병증명서의 사본(등기부 사본 등)을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조 명의변경 신청의 세부사항</p> (1) [기재사항]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9조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에 대해 다음 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명의변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ii) 명의변경과 관련된 등록번호 (iii) 양도인의 성명·주소 (iv) 양수인의 성명·주소 (v) 명의변경 날짜 (vi)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과 법인 설립 국가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법인 설립 국가의 행정지역명 (vii) 양수인이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 국가명, 양수인이 자신의 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거소가 있는 국가명, 그리고 만약 양수인이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사본은 서류를 발급한 기관, 공증인,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의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c) 계약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다수의 공동권리자 가운데 전부는 아니나 일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공동권리자의 서류 서명을 통해 명의변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d) 계약 또는 합병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명의변경의 경우(법률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명의변경 등),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에 대한 증명서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사본은 서류를 발급한 기관, 공증인,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의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3)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4) [단일 신청] 2 이상의 등록과 관련한 명의변경에서, 각 등록별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모든 등록번호가 신청에 기재되어 있으면, 하나의 신청으로 충분하다.</p> <p>(5) [출원의 명의변경]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을 특정하여 명의변경 신청 가능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p> <p>(6)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 신청에 대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p> <p>(7) [증거] 제(2)항제(b)호 또는 제(d)호 적용시, 행정청이 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본 조에서 언급된 문서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명</p> <p>(viii) 양도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p> <p>(ix) 양수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p> <p>(x) 양수인이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p> <p>(xi) 명의변경의 근거</p> <p>(2) [계약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위한 첨부서류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으로 인한 명의변경 신청이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계약서 사본(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기관에 의해 원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p> <p>(ii) 명의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발췌본(공증인 또는 다른 관할 기관에 의해 계약서의 진실한 발췌본으로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음)</p> <p>(iii)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가 서명한, 비인증 양도증명서</p> <p>(iv)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가 서명한, 비인증 양도확인서</p>
<p>제20조 성명 또는 주소 변경</p> <p>(1) [디자인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p> <p>(a) 디자인권자가 바뀌지 않았으나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각</p>	<p>제15조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신청의 세부사항</p> <p>계약당사자는 조약 제20조에 따른 성명 및(또는) 주소 변경 신청이 다음의 기재사항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채약당사자는 관련 등록번호와 기록되어야 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b) 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c) 채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d) 변경이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경우에도, 관련된 모든 등록번호가 신청에 기재되었다면 하나의 신청으로 충분하다.</p> <p>(2)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변경이 하나 이상의 출원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출원 또는 하나 이상의 등록 모두에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단,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출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p> <p>(3)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송달 주소의 변경] 대리인의 성명·주소 변경 또는 관련된 송달 주소의 변경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p> <p>(4) [기타 요건 금지] 채약당사자는 본 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다른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증명서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p> <p>(5) [증거] 채약당사자는 신청에 포함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i)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p> <p>(ii) 디자인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p> <p>(iii) 디자인권자가 송달용 주소를 가진 경우, 그 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조 오류에 대한 정정</p> <p>(1) [신청]</p> <p>(a) 출원, 등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제출된 그 밖의 신청들이, 검색 또는 실체 심사와 무관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수정 가능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서명한 행정청 등록부 및 공보상의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p> <p>(b) 채약당사자는 정정 신청에 대체부분이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조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의 상세사항</p> <p>채약당사자는 조약 제21조에 따른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에 다음 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i) 오류에 대한 정정 신청이라는 취지의 기재</p> <p>(ii) 관련 출원 또는 등록 번호</p> <p>(iii) 정정되어야 할 오류</p> <p>(iv) 정정사항(정정내용)</p> <p>(v)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수정부분,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과 관련한 각각의 출원과 등록이 그러한 대체부분이나 수정부분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c)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에게 오류가 선의에 의한 것임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d)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에게, 오류가 발견된 후에 과도한 지연 없이 신청하였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선택에 따라, 오류 발견 후 고의적인 지연 없이 신청하였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수수료]</p> <p>(a)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b)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b) 행정청은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정정하여야 한다.</p> <p>(3) [단일 신청] 모든 관련 출원이나 등록에 대한 오류 및 정정사항이 동일한 경우,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p> <p>(4) [증거] 주장된 오류가 사실인지 또는 오류정정 신청에 포함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행정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당사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p> <p>(5)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다른 형식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조약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6) [예외] 계약당사자가 재등록 절차에 따라 정정해야 하는 오류인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22조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결의안]]</p> <p>(1) [원칙] WIPO는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술 지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p> <p>(i) 수혜국의 조약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측면에서 ① 개발지향적이고, ② 수요자 중심적이며, ③ 투명하고, ④ 목표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p> <p>(ii) 사용자가 조약 규정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수혜국의 우선 순위와 특정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2)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p> <p>(a) 본 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는 조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며,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지원을 포함】 포함하여야 한다.</p> <p>(i) 필요한 법 체계의 구축, 디자인 등록 당국의 행정관행 및 절차 개정</p> <p>(ii) 관청의 필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적 자원에 대한 훈련 제공에 국한되지 않고, 【요구되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비와 기술 제공을 포함한다.】</p> <p>(b) WIPO는 제(2)항제(a)호, 제(3)항제(a)호 【및 제24조 제(1)항제(c)호】에 따른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WIPO의 활동·조치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 재원이 허용하는 한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WIPO는 동 조약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하여, 수혜국 정부와 국제 금융기구 및 정부간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3) [기타 규정] (a) WIPO는 등록 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등록 디자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WIPO는 이 시스템을 통한 계약당사자의 정보 교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p> <p>(3) 【기타 조항】 (a)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기존의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등록디자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려는 계약당사자의 노력을 지원한다.</p> <p>【(b) 동 조약의 계약당사자는 디자인 창작자 【자연인 및 SMEs】에게 혜택을</p>	

Draft Articles	Regulations
<p>주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강구하여야 한다.】 【권장된다.】 . 【그러한 수수료 감면 제도는 개도국 또는 최빈국에 거주하거나, 당해국가의 국적을 지닌 창작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3조 시행규칙</p> <p>(1) [내용]</p> <p>(a) 본 조약의 시행규칙은 다음 사항을 규율한다.</p> <p>(i) 본 조약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함을 명백히 규정한 사항</p> <p>(ii) 본 조약의 조항 이행을 위해 유용한 모든 세부사항</p> <p>(iii) 모든 행정적 요건/사항 또는 절차</p> <p>【(b) 또한 시행규칙은 총회가 제정한 국제표준양식을 규정한다. 】</p> <p>(2) [시행규칙 개정] 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은 3/4의 득표가 필요하다.</p> <p>(3) [만장일치 요건]</p> <p>(a) 시행규칙은 만장일치로만 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b) 제(a)호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과 관련하여,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은 만장일치를 요구한다.</p> <p>(c) 만장일치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 투표한 표만 고려하며 기권은 표로 간주하지 않는다.</p> <p>(4) [시행규칙과 조약의 상충] 조약의 조항과 시행규칙의 조항이 상충할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조 국제양식 견본</p> <p>국제사무국은 조약 제24조제(2)항제(ii)목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국제표준양식 견본을 발행하여야 한다. 】</p>
제24조 총회	
제25조 국제사무국	
제26조 개정	
제27조 조약의 당사자	
제28조 발효(비준 및 가입 유효일)	
제29조 유보	
제30조 조약의 폐기	
제31조 조약의 언어(서명)	
제32조 기탁자	